

의안번호	제 581 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12월 일 (제325회)

##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3년 12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

의안 번호	제581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년 12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도지사 선거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공약사업 확정 및 관리체계 (안 제3조~제4조)
  - 취임후 3개월 이내 확정, 확정후 2개월 이내 세부실천계획 수립
-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(안 제5조~제7조)
  -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
  - 결과 부진 및 문제예상시 시정조치 요구
- 평가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 등 (안 제8조~제14조)
  - 공약사업 수정·보완사항 심의, 추진실적 평가 등
  - 25명 이내 구성, 도내 시민·사회단체 및 대학교수 등
  - 전체회의 반기별 소집, 소위원회 필요시 운영
- 추진실적 공개 및 외부평가 등 (안 제15조~제16조)
  - 공약사업 실천계획, 추진실적 홈페이지 등에 공개
  - 시민단체,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 적극 협조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도지사 공약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약사업”이란 도지사가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·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총괄부서”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3. “주관부서”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.
4. “협조부서”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.

**제3조(확정 및 관리체계)** 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.

-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2개월 이내에 수립한다.
- ③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.

**제4조(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)**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방안, 의견수렴,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③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·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**제5조(추진실적 분류기준)** ①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점검은 분기별·연도별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완료 :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사업
2. 이행 :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
3. 정상추진 :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
4. 지연(부진) : 완료시기 지연(1년 이상) 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(당해 계획대비 60% 미만의 실적)한 사업
5. 추진불가(미착수) : 계획, 여건, 법률 등의 변경,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거나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

**제6조(추진실적 보고)**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·연도별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점검 및 보완)**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확인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8조(공약사업 평가·자문위원회 구성 등)** ①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 평가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·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보완·변경사항 심의 및 건의
2.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가능한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·건의
3.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
4. 민·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·건의
5.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

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도내 기관 및 시민·사회단체, 관련전문가 등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도지사의 임기종료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문위원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구성위원 중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9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0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 위원장은 반기별로 또는 필요시 소집·운영하되 그 의장이 되며, 분과별 소위원장은 수시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·장소·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11조(평가지기 및 사후관리)** ①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,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자료요청 등)**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괄부서 및 주관

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3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평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**제14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참석 및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공개)**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확정, 실천계획, 추진실적,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외부평가)** ① 도지사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실천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외부평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준하여 관리한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민선〇기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  
(〇〇실·국)

공약제목 (코드번호)
-------------

필요성

- 
- 

사업개요

- 위치 :
- 사업기간 :
- 사업규모(내용) :
- 총사업비 : 백만원(국비〇〇, 도비〇〇, 시군비〇〇, 기타〇〇)

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억원)

구분	계	기투자	〇〇년	〇〇년	〇〇년	〇〇년	〇〇년이후
계							
국비							
도비							
시군비							
민자등							

※ 투자계획란의 금액은 사업완료 연도까지 기재

추진상황

- 
- 
- 
- 

향후추진계획

- 
- 
- 
-

[별지 제2호 서식]

도지사 공약사업 분기별 추진상황('00. 0/4분기)

(○○실·국)

I. 추진상황

총건수	완 료			추진 중			추진 불가 (미착수)
	소 계	00.0/4까지	00.0/4 중	소 계	정상 추진	지연 (부진)	
0	0			0			0

※ 총건수는 공약사업 기준으로 작성

II. 완료·이행사업( 0/4분기 중 )

공 약 사 업 명

코드번호

가. 사업개요

- 
- 
-

나. 투자계획대비 예산확보실적

(단위 : 억원)

구분	투 자 계 획							예 산 확 보			
	계	기투자	00년	00년	00년	00년	00년 이후	계	00년	00년	00년
계	0	0	0	0	0	0	0	0	0	0	0
국비	0							0			
도비	0							0			
시군비	0							0			
기타	0							0			

※ 투자계획란의 금액은 사업완료 연도까지 기재

다. 00년(당해 연도) 계획

- 
- 
- 
-

라. 추진실적

《00년 0/4분기(전 분기)까지》

○

《00년 0/4분기(당해 분기)까지》

○

마. 향후 추진계획

○

○

○

바. 추진성과

○

○

○

Ⅲ. 정상추진

공 약 사 업 명

코드번호

가. 사업개요

- 
- 
- 

나. 투자계획대비 예산확보실적

(단위 : 억원)

구 분	투 자 계 획							예 산 확 보			
	계	기투자	00년	00년	00년	00년	00년 이후	계	00년	00년	00년
계	0	0	0	0	0	0	0	0	0	0	0
국 비	0							0			
도 비	0							0			
시군비	0							0			
기 타	0							0			

※ 투자계획란의 금액은 사업완료 연도까지 기재

다. 00년(당해 연도) 계획

- 

라. 추진실적

《00년 0/4분기(전 분기)까지》

- 
- 

《00년 0/4분기(당해 분기)까지》

- 
- 

마. 문제점 및 대책

- 
- 

바. 향후 추진 계획

- 
-

IV. 부진(지연)·추진불가(미착수)

공 약 사 업 명

코드번호

가. 사업개요

- 
- 
- 

나. 투자계획대비 예산확보실적

(단위 : 억원)

구 분	투 자 계 획							예 산 확 보			
	계	기투자	00년	00년	00년	00년	00년 이후	계	00년	00년	00년
계	0	0	0	0	0	0	0	0	0	0	0
국 비	0							0			
도 비	0							0			
시군비	0							0			
기 타	0							0			

※ 투자계획란의 금액은 사업완료 연도까지 기재

다. 00년(당해 연도) 계획

- 

라. 추진실적

《00년 0/4분기(전 분기)까지》

- 

《00년 0/4분기(당해분기)까지》

- 

마. 부진(지연)·추진불가(미착수) 사유 및 대책

- 

바. 향후 추진 계획(조치사항 등)

-

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표

①코드 번호	②사 업 명	추진상황		관 정							⑩비고 (완료 예정시기)
		③계획	④실적	⑤완료 %	⑥이행	⑦정산 추진	⑧지연 (무진)	⑨추진평가 (미진수)			
	OOOO 시스템 구축					○					
	<사업내용> • OOO 하드웨어 구축 • OOO 네트워크 구축 • OOO 소프트웨어 구축 중소기업비(국,도,시군,기타)	0종 0종 0종 총 000억원 (국:0,도:0,시군:0,기타:0)	0종 0종 0종 총 000억원 (국:0,도:0,시군:0,기타:0)								
	- '00년현재까지 사업비 확보실적 (재민비) • 기타자사업시작부터 민선0기 시작 연도까지 • '00-'00현재(민선0기 다음연도부터 현재까지)	총 000억(국:0,도:0,시군:0,기타:0) 00억(국:0,도:0,시군:0,기타:0) 00억(국:0,도:0,시군:0,기타:0)	총 000억(국:0,도:0,시군:0,기타:0) 00억(국:0,도:0,시군:0,기타:0) 00억(국:0,도:0,시군:0,기타:0)								

※ 작성요령

- ①, ② :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코드번호와 확정된 사업명(사업개요 포함)
- ③ 계획 : 세부실천계획상의 계획된 수치 및 목표량 작성
- ④ 실적 : 분기별 추진실적(누계)
- ⑤~⑨ : 제4조 분류기준에 의하여 진행상태 표시
- ⑩ 비고 : 완료 예정시기 기재

#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도지사 선거공약의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
-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가·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평가·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 및 현장점검에 따른 제경비

## 3. 관련조문 : 안 제8조(공약사업 평가·자문위원회 구성 등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위원회 회의 및 현장점검 등 참여에 따른 지급수요  
규모는 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변동없이 매년 발생
- 나. 추계결과 : '14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,500만원 정도 소요(700만원×5년)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 ※ 매년 도비확보 운영중(풀여비)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5차년도 (2018년)	계
세 출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	35,000
외부전문가 참여수당 등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	35,000

## 6. 작성자 :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